

Yeosu Web Contents

2024년 04월 27일 05시 43분



목차

목차	2
부동산중개수수료	3
주택(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3
비고	3
오피스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3
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	4

개별공시지가열람	개별주택가격열람	도로명주소안내	부동산중개업안내
조상땅 찾기 안내	비법인단체 신청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부동산중개수수료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부동산특별조치법 안내	지적재조사사업

주택(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2021. 10. 19. 시행

구분	거래금액	요율	한도액	비고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거래금액 산정> ▪ 매매 : 거래금액 ▪ 교환 : 교환대상 중 거래 금액이 큰 중개 대상물의 가액 ▪ 임대차 등 > 월세가 없는 경우 : 보증금 > 월세가 있는 경우 ▪ 5천만원 이상 : (월세×100)+보증금 ▪ 5천만원 미만 : (월세× 70)+보증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비고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오피스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구분	상한요율	요건
매매·교환	1천분의 5	▪ 전용면적 85㎡이하일 것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을 갖출 것
임대차 등	1천분의 4	

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Yeosu Web Contents

